

파주시 공고 제2025-3103호

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2의2호, 제65조 및 「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7조의4, 제2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0일

파 주 시



1. 명 칭: 가람삼육타워 골목형상점가
2. 대 표 자: 김성민
3. 소 재 지: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31, 37, 45

※문의처: 파주시청 민생경제과(031-940-4546)